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89 발의연월일: 2020. 12. 16.

발 의 자:김병욱·강득구·강병원

김민기 • 김종민 • 민병덕

민형배・송재호・유동수

이정문 · 홍성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별표 제13호에 의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임.

그런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그 명칭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실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개발원 등에 대한 민원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명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다.

③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 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